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422
----------	------

발의년월일 : 2020년 4월 3일

발 의 자 : 이병도, 김혜련, 오현정, 김동식,
김용연,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화숙, 김소양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복지수요 증가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증가 속에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언어적·물리적 폭력(폭행, 폭언, 위협, 성희롱 등)과 인권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이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 이에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제3항 신설)
- 나.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개선”을 “개선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시장의 책무) ①·②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u><신설></u></p> <p>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u>개선</u>을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4조(시장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u>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8조(실태조사) ① ----- ----- <u>개선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u>----- -----.</p> <p>②·③ (현행과 같음)</p>